

전북대학교 금고지정 신청 공고

전북대학교 금고지정 신청 공고를 제한(지역)공개경쟁방법을 통하여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

2020년 11월 2일

전북대학교



1. 입찰건명 : 전북대학교 금고지정

2. 입찰방법 및 방식

가. 입찰방법 : 제한(지역)경쟁입찰

나. 입찰방식 : 제안서 제출 평가(본교 금고지정심의위원회 평가)

3. 금고의 수 : 단일금고

4. 약정기간 : 4년(2021. 1. 1. ~ 2024. 12. 31.)

5. 신청자격

은행법에 의해 인가받은 은행. (단, 전주시 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)

6. 금고의 주요업무

가. 각종 세입금의 수납·보관 및 세출금의 지급

나. 세입·세출외 현금의 수납 및 지급

다. 유가증권과 일상경비의 출납 및 보관

라. 여유자금의 예치 및 관리

마. 세입·세출내역 전산 기록 유지

바.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

7. 공고기간 및 관련서류 열람

가. 공고기간 : 2020. 11. 2.(월) ~ 11. 6.(금)

나. 열람기간 : 2020. 11. 2.(월) ~ 11. 6.(금)

다. 열람장소 : 전북대학교 인문사회관 8층 재무과(☎063-270-4372)

※ 열람가능 자료 : 예산서, 결산서, 기타사항 등

8. 금고지정신청서 및 제안서 접수

가. 제안서접수 : 2020. 11. 6.(금) 17:00까지

나. 접수장소 : 전북대학교 인문사회관 8층 재무과(☎063-270-4372)

다. 서 류 : 금고지정신청서 [별지서식] , 제안서, 요약서, 각서, 사용인감계

- 신청서 및 제안서(15부) 확인 후 밀봉 예정으로 방문접수 시 금융기관의 장 또는 위임을 받은 임원의 사용 인감 지참 (단,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, 재직증명서, 접수자 신분증 사본 첨부)

라. 부 수 : 제안서 15부 (원본 1, 사본 14)

마. 방 법 : 직접 방문접수

9. 금고지정 결과 발표 : 2020. 11. 30.(월) ※입찰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

- 전북대학교 홈페이지(www.jbnu.ac.kr) 공지사항에 게시

10.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: 별지 서식 참조

11. 평가방법

가. 「전북대학교」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전북대학교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한국은행,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

나. 전북대학교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기 제출된 제안서를 근거로 심의하며 필요시 보충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.

다. 평가항목에 부합되는 제안내용을 미제출 시 평가하지 않음.

라.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제안서 평가 결과 1순위를 대학금고로 지정함.

다만, 대학금고로 지정된 은행이 지정을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 금융기관 순으로 금고를 지정함.

12. 비용부담

금고지정 신청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및 약정체결, 선정된 후 필요한 장비, 전산 프로그램 개발비 등은 금융기관의 자부담으로 함.

13. 약정체결 및 손해배상

- 가. 전북대학교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.
- 나. 약정체결시 약정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약정이행보증금(또는 보증서 제출)을 전북대학교 협력사업 추진계획 금액의 100분 10이상 납부함.
- 다. 신·구 금고 간 금고업무 상호 인계·인수 시 기존금고에 예치한 정기예금 등에 대하여는 만기도래 후 인수·인계하도록 함.
- 라. 전산시설의 경우 2021. 1. 1일부터 실제로 정상운영 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제시한 정상가동 기간을 어길 경우 소정의 지체상금 등 손해 배상책임을 짐.
- 마. 전북대학교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,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이 금융기관에 있으며, 해당 손해액은 금융기관에서 부담함. 또한, 앞으로 금고지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.

14. 기타사항

- 가. 제안서는 금고지정 신청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.
- 나. 제출된 서류(제안서 등)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안서 접수마감 후에는 추가 및 보완서류는 일체 접수하지 아니하되, 금고지정심의 위원회에서 보충자료 요구 시에는 예외로 함.
- 다. 제안서 등의 제출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가 발생하여도 이의제기를 할 수 없고 심의결과 등의 공개여부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름.
- 라. 1개의 금융기관만이 제안서를 제출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대학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함.
- 마. 기타 문의사항은 전북대학교 재무과(☎063-270-4372)로 문의바람.